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. 10 선고 2021가단3114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8. 20.

판 결 선 고 2021. 10. 0.

주 문

1.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7지분에 관하여,
가.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2016. 5. 1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소외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C는 2001. 6.경 소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고, 위 D은행은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2003. 5. 21. 소외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, 위 채권은 다시 G 유한회사, H 유한회사, 주식회사 E, 소외 I 유한회사를 거쳐 2019. 2. 22. 원고에게 양도되었다. 원고는 위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20차전11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. 12. 3. “C는 원고에게 금 9,512,384원 및 그 중 금 1,694,000원에 대하여 2021. 1. 23.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.

나. 한편, C의 부 J가 2010. 1. 4.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은 2016. 5. 12.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, 그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위 각 부동산 중 2/17지분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’이라 한다)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1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는바, 이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(1)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

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잇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),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K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, 채무자인 K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(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).

(2)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,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체결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, 앞서 본 것처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,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,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원상회복

나아가 그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,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(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), 결국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전선주

